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9

2021. 11.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강남구청장(치수과)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2) 추진 필요성

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장을 대회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으로 정비예정임(내년 상반기 준공예정)

나) 클라이밍이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청소년 및 일반인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운영사(대치리버파크)는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클라이밍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시설물 운영 업무는 별도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 인공암벽장의 안전관리요원은 교육 이수 및 해당 시설물 관리능력이 필요하여, 서울시 자치구 인공암벽장은 (사)서울산악연맹에서 대부분 위탁운영중

다.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위탁범위 :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일체

1)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공암벽장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홍보 등 사무 일체

4) 그 밖에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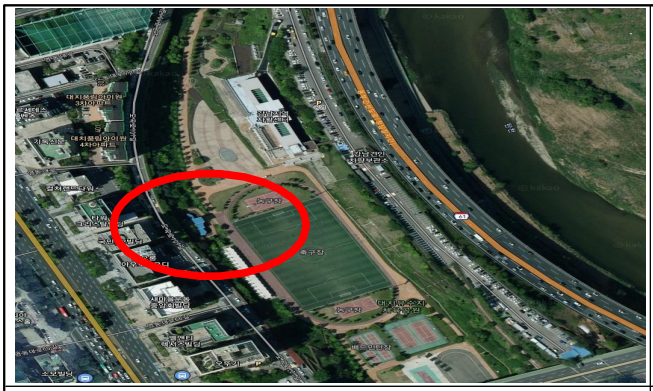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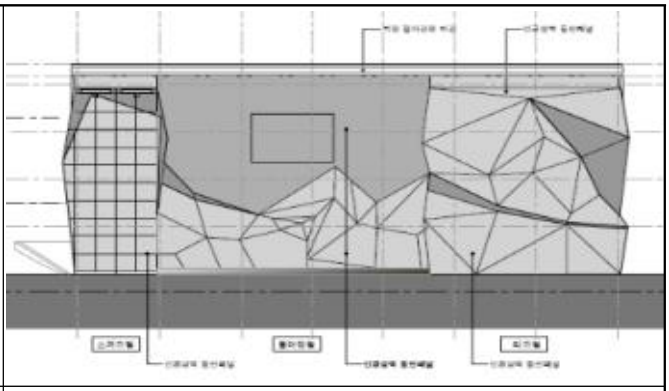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0-1 (2022. 3월 준공 예정)

2) 전 체 규 모 : 인공암벽장 1개소

3) 운 영 시 간 : 매일 09:00~21:00

4) 시 설 인 력 : 3명(안전관리요원 2명, 강사 1명)

	
위치도	전경 (안)

마. 민간위탁 기간 : 2022. 3월. ~ 2022. 12월.(예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196,052천원 (구비, 2022년 예산)

통계목	구분	세부집행내역	예산액 (단위:천원)
총계			196,052
민간위탁금(인공암벽장 운영)	인건비	· 안전관리자 인건비 35,471,500원×2명=70,943,000원	70,943
		· 강사 인건비 35,000원×1명×6시간×20일×9월=37,800,000원	37,800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등 소모품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 노트북 임차 100,000원×10월=1,000,000원	1,000
		· 가입신청서 제작 5,000,000원×1식=5,000,000원	5,000
		· 오토빌레이 안전인증 1,980,000원×1식=1,980,000원	1,980
		· 점검용 장비임차 1,500,000원×2일×2회=6,000,000원	6,000
		· 무인경비시스템 250,000원×10월=2,500,000원	2,500
		· 예약사이트 제작 및 운영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공공운영비	· 우편,전기,통신비 200,000원×10월=2,000,000원	2,000
		· 배상책임보험 등 38,829,000×1식=38,829,000원	36,829
	재료비	· 암벽장비(교육장비) 구입비 20,000,000원×1식=20,000,000원	20,000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에 따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장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한 바, 각 각의 설명이 요구되며, 인력관리,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외의 시설관리 여부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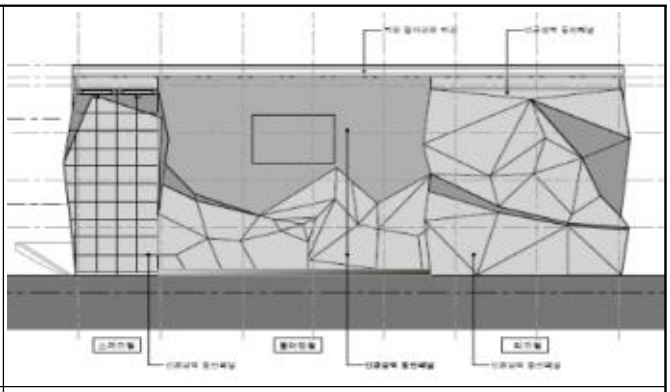
1)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공암벽장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홍보 등 사무 일체
4) 그 밖에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또한, 위탁 시설 개요는 아래와 같고,

1)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0-1 (2022. 3월 준공 예정)
2) 전체규모 : 인공암벽장 1개소
3) 운영시간 : 매일 09:00~21:00
4) 시설인력 : 3명(안전관리요원 2명, 강사 1명)



위치도



전경 (안)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요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통계목	구분	세부집행내역	예산액 (단위:천원)
총계			196,052
민간 위탁금 (인공 암벽장 운영)	인건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35,471,500원×2명=70,943,000원	70,943
		·강사 인건비 35,000원×1명×6시간×20일×9월=37,800,000원	37,800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노트북 임차 100,000원×10월=1,000,000원	1,000
		·가입신청서 제작 5,000,000원×1식=5,000,000원	5,000
		·오토빌레이 안전인증 1,980,000원×1식=1,980,000원	1,980
		·점검용 장비임차 1,500,000원×2일×2회=6,000,000원	6,000
		·무인경비시스템 250,000원×10월=2,500,000원	2,500
		·예약사이트 제작 및 운영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공공운영비	·우편,전기,통신비 200,000원×10월=2,000,000원	2,000
		·배상책임보험 등 38,829,000×1식=38,829,000원	36,829
	재료비	·암벽장비(교육장비) 구입비 20,000,000원×1식=20,000,000원	20,000

○ 인공암벽장 대한 필요 인력수(업무내용), 공간배치 현황, 예상 이용자 수 등의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설명 등이 필요해 보임. 참고적으로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2]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3]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이며, 동 시행규칙 별표는 별지와 같은 바 이와 연계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 이후의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도 요구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제4조제2항 각 호와 연계 설명도 필요해 보임

○ 이에, 본 건은 위탁 운영의 필요성,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사료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9.>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7)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8)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서울시 타자치구 중 인공암벽장을 조성한 곳이 있는지

○ 답 변 : 은평구 및 중랑구에 각 1개소씩 인공암벽장이 조성되어 있음

○ 질 의 : 인공암벽장은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것이지만 타구 주민들도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강남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 답 변 : 강남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는 없지만 타 지역 주민들보다 인공암벽장 이용 시 강남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 질 의 : 요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탁기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길 바람

○ 답 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질 의 : 대치유수지에 조성되는 인공암벽장 운영시간이 저녁 9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실내가 아닌 실외에 조성한 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으로 적정한 것인지

○ 답 변 :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을 참고하여 정한 부분이며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 질 의 : 인공암벽장을 국제규격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축구장이나 농구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한 대안은 마련한 것인지

○ 답 변 : 현재 마련된 방안은 없으나 앞으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탄천 위쪽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39

제출연월일 : 2021.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치 수 과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1.7.1.)】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2) 추진 필요성

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치유

수지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장을 대회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으로 정비예정임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

나) 클라이밍이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청소년 및 일반인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운영사(대치리버파크)는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클라이밍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시설물 운영 업무는 별도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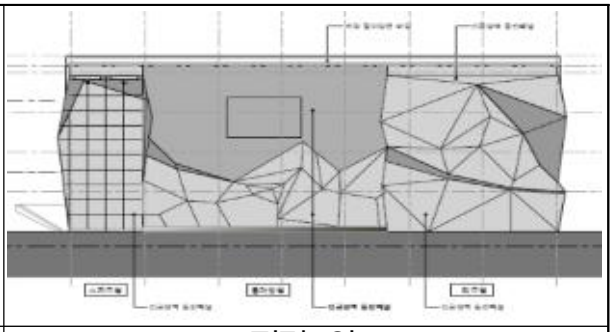
※ 인공암벽장의 안전관리요원은 교육 이수 및 해당 시설물 관리능력이 필요하여, 서울시 자치구 인공암벽장은 (사)서울산악연맹에서 대부분 위탁운영중

다.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위탁범위 :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일체

1)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공암벽장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홍보 등 사무 일체
4) 그 밖에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0-1 (2022. 3월 준공 예정)
2) 전 체 규 모 : 인공암벽장 1개소
3) 운 영 시 간 : 매일 09:00~21:00
4) 시 설 인 력 : 3명(안전관리요원 2명, 강사 1명)

	
위치도	전경 (안)

마. 민간위탁 기간 : 2022. 3월. ~ 2022. 12월.(예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196,052천원 (구비, 2022년 예산)

통계목	구분	세부집행내역	예산액 (단위 : 천원)
총계			196,052
민간 위탁금 (인공 암벽장 운영)	인건비	· 안전관리자 인건비 35,471,500원×2명=70,943,000원	70,943
		· 강사 인건비 35,000원×1명×6시간×20일×9월=37,800,000원	37,800
	사무 관리비	· 사무용품 등 소모품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 노트북 임차 100,000원×10월=1,000,000원	1,000
		· 가입신청서 제작 5,000,000원×1식=5,000,000원	5,000
		· 오토빌레이 안전인증 1,980,000원×1식=1,980,000원	1,980
		· 점검용 장비임차 1,500,000원×2일×2회=6,000,000원	6,000
		· 무인경비시스템 250,000원×10월=2,500,000원	2,500
		· 예약사이트 제작 및 운영 500,000원×10월=5,000,000원	5,000
	공공 운영비	· 우편,전기,통신비 200,000원×10월=2,000,000원	2,000
		· 배상책임보험 등 38,829,000×1식=38,829,000원	36,829
	재료비	· 암벽장비(교육장비) 구입비 20,000,000원×1식=20,000,000원	20,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작성자 : 치수과 시설7급 송루비(☎ 02-3423-6602)